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 발의연월일: 2020. 6. 12.

발 의 자: 김도읍・박완수・추경호

주호영 · 권명호 · 박덕흠

조수진・이 용・金炳旭

정진석 · 정점식 · 권영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65조제4호 및 제66조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 략) <u><신 설></u>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u>제1항</u> 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 폭력행위자 ③제1항 또는 제2 항

제652	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고	과하다.		

- 1. ~ 3. (생략)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5조(과태료)
<u>.</u>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6조(과태료)
<u>.</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